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10. 14 선고 2020가단454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9. 23.

판결 선고 2020. 10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C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단2374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

청구원인 기재 내용으로 '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'는 판결을 받았는바, C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원용일

별지